

일제강점기 ‘간호부규칙(看護婦規則)’에 관한 연구

이 꽃 메* · 김 화 중**

I. 서 론

간호사의 면허 자격과 업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은 전문직 간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다. 그런데 1914년에 이미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인력의 자격과 면허를 규정한 법일 뿐 아니라 간호 단독법인 ‘간호부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간호부규칙’의 내용과 변화 과정을 아는 것은 우리나라의 간호가 어떠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고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간호부규칙’은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언급한 몇몇 글이 있지만 관련 내용이 소략하여 단순한 소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간호부규칙’에 관한 논문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간호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14년 제정 당시 ‘간호부규칙’의 내용을 분석하고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변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한국 간호의 제도적 출발과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간호부규칙’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변화의 특성에 따라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1930·40년대의 3시기로 나누었다. 먼저 1910년대에는 제정

당시 ‘간호부규칙’의 내용을 전문 번역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 법규들의 내용을 살펴 보겠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직업적 간호가 어떤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간호부규칙’에 따른 자격시험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한 예를 들어 제시하겠다. 1920년대에는 ‘간호부규칙’의 전문 개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간호부¹⁾의 자격 향상의 주체와 이유를 살펴보겠다. 1930·40년대에 들어서서는 ‘조선간호부규칙’으로 명칭이 바뀌고 ‘개막’되는 과정, 그리고 간호부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여타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목적에서 간호부를 통제하는 제도가 늘어나고 자격이 저하되었는지를 알아보겠다.

연구는 ‘간호부규칙’의 제정과 개정과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관계 문헌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역사학 연구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즉,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통하여 관계 법령을 찾고, 기타 여러 자료와 신문잡지 등에서 관계 기사를 찾아 내용을 분석하고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간호부규칙’ 제정과 시행, 개정과 그 배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조선총독부

1) 일제강점기에 면허를 가진 간호인력의 공식적 호칭은 ‘간호부(看護婦)’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간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간호부 숫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변화를 파악하여 ‘간호부규칙’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II. 본 론

1. 1910년대 : ‘간호부규칙’의 제정과 시행

우리 나라의 근대 법규 중에 간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최초의 것은 1907년에 만들어진 ‘대한의원 관제’로써 대한의원에서 간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²⁾ 일제강점 이후에도 관립 간호교육에 관한 법규가 있을 뿐³⁾, 간호인력의 자격이나 면허, 업무의 영역 등을 규정한 법규는 1910년대 초까지 없었다. 다만 일본인 간호부(看護婦)가 영사관 또는 이사청에서 일하려면 관계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간단한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⁴⁾

간호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간호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대두되었다. 한국에서 의사, 병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간호부의 숫자도 늘어나서 1912년 말에는 442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중에는 일본인이 40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국인은 32명, 외국인은 8명이었다.⁵⁾ 그러나 이들의 자격기준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수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종래 간호부의 자격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간호에 관한 학술,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있어서 위생상 위해(危害)를 초래”하므로 “간호부에 대한 규정을 세워 자격을 한정하고 업무상의 취체(取締)를 할 필요를 인정”하여 1914년 ‘간호부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6,7)}

‘간호부규칙’은 조선총독부령 154호로 10월 13일 공포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간호부규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2) 칙령 9호 ‘대한의원 관제’(관보. 1907.3.13.)
- 3) 1911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9호로 반포된 ‘조선총독부원 부속의학강습소 규칙’과 1913년 10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94호로 반포된 ‘조선총독부 도자혜의원 조산부 및 간호부 양성규정’을 말한다.
- 4) 白石保成(1918). 朝鮮衛生要義. 89
- 5) 조선총독부(1913).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458.
- 6) 조선총독부(1922). 朝鮮衛生事情要覽. 14
- 7) 이즈음 여타 의료인에 대한 법령 역시 만들어져서 1913년에는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醫生)규칙’ 등이, 1914년 7월에는 ‘산파규칙’이 만들어졌다.

1914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간호부규칙^{8,9)}

- 제1조 간호부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18세 이상의 여자로서 아래의 자격이 있어야 함
1. 조선총독이 정한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道)자혜위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
 3. 조선총독이 지정한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자
 4. 도(道)·부(府)·현(縣)의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
 5. 관립, 부현립 또는 일본적십자사의 간호부 양성소를 졸업한 자
- 제2조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부의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음
1. 신체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간호부의 업무를 견딜 수 없음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 또는 간호부의 업무에 관한 죄를 범한 자
- 제3조 간호부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씨명, 생년월일을 적은 서면에 이력서 및 제1조 각호의 자격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해 경무부장(경성에 있는 경무총장. 이하 같음)에 신청함. 경무부장은 전항의 신청자에게 면허를 줄 때는 간호부면허증을 교부함
- 제4조 간호부 씨명을 변경 또는 면허증을 결손·망실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적어 15일 이내에 경무부장에게 그 서환(書換) 또는 재하부(再下付)를 신청함. 망실한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는 곧 경찰서(경찰분서 및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헌병분유소를 포함. 이하 같음)에 제출함
- 제5조 간호부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인지로써 수수료 1원, 그 서환 또는 재하부를 신청 하는 자는 50전을 납부함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환부하지 않음.
- 제6조 간호부가 개업할 때는 5일 내에 경찰서에 제출함. 그 주소를 이전할 때 역시 같음. 단 이전에 의하여 관할경찰서가 다를 때는 신규(新舊) 양쪽의 경찰서에 제출함.
- 제7조 간호부로 취차소(取次所) 기타 이와 유사한 영
- 8) 조선총독부관보. 1914.10.13
 - 9) 일제강점기 법규는 일본어로 반포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한 법규는 모두 일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업소를 세우려는 자는 수수료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경찰부장의 인가를 받음. 그 내규를 변경할 때 도 역시 같음

제8조 간호부가 폐업할 때는 5일 내에 경무부장에게 제출하여 면허증을 반납함. 사망했을 때는 호주 또는 가족이 본 조의 수속을 함.

간호부취차소를 폐지할 때는 5일 내에 경무부장에게 제출함.

제9조 경무부장은 간호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또는 그 체면을 더럽힌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면허를 취소 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전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3일 내에 면허증을 경찰서에 제출함.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고 제출한 면허증에는 그 이면에 정지의 요지를 기재함. 기간 만료한 후 이를 환부함.

제10조 경무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7조에 규정한 영업소의 폐지를 명함.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제11조 간호부시험은 도장관이 행함
기험기일 및 장소는 이를 고시함.

제12조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음

1. 간호법
2. 해부생리의 대의(大意)
3. 소독법
4. 실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전조 제4호의 시험은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이를 행함

제14조 간호부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씨명, 생년월일을 적은 서면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도(道)장관에게 제출함

제15조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함

제16조 본령의 규정에 의해 경무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경찰서를 경유함

제17조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1. 면허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닌 신고를 한 면허를 받거나 또는 정지(停止)의 처분에 위반하여 간호부의 업무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기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제18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 제2항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함

부칙

본령은 대정 3년(1914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본령을 시행할 때 간호부의 업무를 하는 자는 제1조 제3조 내지 제5조, 간호부취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해 본령 시행의 날부터 3일 내에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음.

전항의 면허 또는 인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허부(許否)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

이상 새로 만들어진 '간호부규칙'의 제1조에 의하면 간호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특정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간호부 시험에 합격하여야 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간호부의 업무를 견딜 수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 또는 간호부의 업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간호부가 될 수 없었다. 그밖에도 "체면을 더럽힌 행위가 인정될 때"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을 제9조에서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 6조까지, 그리고 8조에서는 면허증 신청과 교부, 재교부, 취업 신고, 폐업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간호부규칙취급수속'에서 규정한 간호부 면허증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양식이였다.¹⁰⁾

제	장	도	간		
	위	경	호		간
	훈	무	년	부	호
	공	부	월	를	본
	씨	면	생	씨	적
호	명	일	허	생	면
	인	함	년	명	허
			월		증
			일		

그림 1. 간호부 면허증 양식

10) 1914년 10월 17일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훈령 갑(甲) 제 48호 '간호부규칙취급수속'(조선총독부관보. 1914. 10. 27.). '간호부규칙취급수속'은 간호부에 관한 업무의 담당 관서인 경찰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한 법규로써 '간호부규칙'과 같은 날 반포되었다.

제7조에서는 독간호(private nursing)를 중개하는 취차소를 간호부가 세워서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수수료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경찰부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간호부 면허를 획득하는 방법중 하나인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간호부 시험은 도별로 행하며, 시험과목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지는데, 이론은 “1. 간호법, 2. 해부생리의 대의, 3. 소독법” 세 가지였다. 먼저 이론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었고, 전과목 모두 일정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이 되었다.¹¹⁾

제17조와 18조에서는 ‘간호부 규칙’의 여러 사항을 어긴 경우 벌금이나 과료에 처함을 규정하였는데, 특히 간호부 면허를 처음 부여하게 되는 만큼 허위 신고로 면허를 받는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였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다음달인 1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며, 간호부들은 11월 3일까지는 면허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단, 면허나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신청만 하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간호부 규칙’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간호관계법으로 간호부의 자격, 면허, 시험, 신고, 법률 위반시의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기준이 결정되고 이들의 배타적 영역이 인정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간호부 취차소 등을 간호부 자신이 개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간호사의 개업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 오늘날보다 앞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만이 간호부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에 성적(性的) 고정관념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많은 내용이 관리와 규제에 이루어져 있고, 그 주체는 국가 경찰조직으로 정해져 있다. 심지어는 면허증에 명시되는 면허 부여자조차 도(道) 경무부장이다. 이는 ‘간호부규칙’ 제정의 목적 중 하나가 간호부를 국가에서 지배하려는 의도에 있고, 특히 현병경찰력을 바탕으로 무단통치를 펼치던 일제의 통치정책이 간호에 대하여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간호업무의 범위나 한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면에서 미비한 ‘간호부규칙’이었다.

수십년간 간호인력과 업무는 존재하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나 제제가 없다가 ‘간호부규칙’이 만들어 지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질

문이 제기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법규로 반포하여 ‘간호부규칙’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 처음은 경북 경무부장이 4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위생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그 형식을 위수(衛戍)로 반포하였다.¹²⁾ 그중 중요한 사항은 간호부와 간호부견습, 간병인의 차이를 비교하여 밝힌 것이다. 먼저 간호부는 면허가 있고 직접 간호를 하지만, 간호부견습은 면허가 없으며 단독으로는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부를 보조하여 일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간병인에 해당하는 부첨인(附添人)은 “주로 환자에 속하여 병상의 난역에 종사”하지만 간호부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예속”한다고 그 차이를 밝힌 것이다.

서양인 간호부에게 어떻게 면허를 부여할 것인가 역시 문제가 되었다. ‘간호부규칙’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간호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졸업자에게 면허를 주고, 아니면 시험을 보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서양의 간호교육기관을 조사하여 지정하기가 어려웠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따라서 서양인 간호부의 이력을 조사한 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하여 합격시켜서 면허를 주기로 하였다. 특히 “될 수 있는 한편의의를 주어 본인이 깊이 통달한 조선어 또는 외국어 등으로 간단한 시문(試問)을 하여 지장 없는 자는 합격증서를 부여하여 계속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¹³⁾ 한 것은 면허 부여에 있어서 법규의 규정을 고수한 일본인이나^{14,15)} 한국인에 비하여 훨씬 호의적인 태도였다.

이와 더불어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한국인은 한국어로 간호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말과 글에 관한 일제 식민정책의 기본은 한국어를 말살시키고 일본어를 보급한다는 것이었지만, 당시 간호부의 숫자가 아주 부족했으므로 한국인 간호부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¹⁶⁾ 이외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 ‘간호부규칙’의 현

12) 1914년 11월 위수 제19978호 간호부규칙중 의의(疑義)의 건(경무총감부 위생과, 1917). 조선위생법규류집. 120-121.)

13) 1914년 12월 위발 제787호 외국인간호부 면허에 관한 건(앞의 책. 122)

14) 1915년 3월 위수 제1530호 간호부자격에 관한 건(앞의 책. 123-124)

15) 1915년 3월 위발 제195호 간호부자격에 관한 건(앞의 책. 124)

16) 언제까지 간호부시험이 한국말로도 시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1) 白石保成. 위의 책. 93

실적 적용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간호부를 배출하는 방법 중에 간호교육기관을 통하는 것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였지만, 면허 시험은 도별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해결해야 했다. 각 도에서는 간호부 면허 시험 시행에 관한 법규를 정하여 이에 따라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한 예를 통하여 살펴 보겠다. 평안남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간호부 시험 취급수속'을 발표하였다.

1914년 10월 29일 조선총독부평안남도고시 58호 간호부 시험취급수속¹⁷⁾

제1조 간호부 시험은 5월 및 11월 2회 이를 시행함. 시험 시행의 기일 및 장소는 약 1개월 이전에 이를 고시함

제2조 간호부 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 기일 10일 전까지 제1호 양식의 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 도청에 제출함
(이하 생략)

이에 의하면 평안남도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간호부 시험을 보았다. 시험 기일과 장소는 1개월 전에 고시하고, 수험 희망자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원서와 이력서를 도청에 제출해야 했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였다. 평안남도의 제1회 간호부 시험은 1914년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평양 자혜 의원에서 하루는 필기 시험, 하루는 실기 시험을 실시하였다.¹⁸⁾ 합격자는 모두 7명으로, 그중 6명은 일본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었다. 나이는 15세에서 25세에 걸쳐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18.7세였다.¹⁹⁾

기타 도에서 고시한 간호부 시험 시행수속과 시험 실시 등도 평안남도의 경우와 대동소이하였다. 단지도에 따라서 산과와 간호부의 시험 시행수속을 묶어서 만들거나, 1년에 1회 실시하거나, 신체 검사에 먼저 합격해야 수험 자격을 주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²⁰⁾

간호부에게 면허가 부여되기 이전인 1913년 한국에 신고된 간호부 숫자는 445명이었다. 그러나 '간호부 규칙'이 시행되던 해인 1914년에는 186명으로 약 60%나 급감하였고, 1916년에야 법령 시행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²¹⁾ 이는 1914년에 즉각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전체 40% 미만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나머지 간호인력은 이후에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획득하여 '간호부'가 되거나 영영 다시는 '간호부'가 되지 못했다.

2. 1920년대 : '간호부 규칙'의 개정

1920년에 들어서서 간호부에 관한 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간호부의 절대적 부족으로, 1920년 말 총 526명인 간호부의 숫자는 1인당 인구가 3만2천여명이나 될 정도였다. 이는 일반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관립 의원의 집무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였다. 특히 1920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데다가, 관립의원을 크게 확충할 예정이었던 조선총독부에서는 간호부의 공급 확충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두번째 문제는 일본의 간호부 면허 자격과 한국의 면허 자격이 차이가 있어서 "조선에서는 우량한 간호부를 얻는 것이 어렵고, 관립의원 초기 일반진료상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간호부 자격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대두되었다.²²⁾ 그 외에 1919년 삼일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한국에 대한 통치 방침을 전환하여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식민지 정책을 새롭게 펴 나갔는데, 그 결과 이전까지는 도 경무부에서 취급하던 간호부의 면허를 도지사가 담당하게 되었다.²³⁾ 이러한 간호부 자격의 향상과 담당 행정부서의 이관은 '간호부 규칙'의 전문개정을 불러왔다. 1922년 5월 2일 조선총독부령 제76호로 전문개정된 '간호부 규칙'은 아래와 같다.

17) 조선총독부관보. 1914.11.3.
18) 1914년 10월 29일 조선총독부 평안남도고시 제59호 제1회 간호부 시험 시행(조선총독부관보. 1914.11.3.)
19) 조선총독부 평안남도고시 제70호(조선총독부관보. 12.15.)

20) 1914년 12월 21일 반포된 조선총독부 충청남도령 제7호 '산과·간호부 시험 시행수속'(조선총독부관보. 1914. 12. 21.)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8. 457
22) 조선총독부(1935). 施政25年史. 502
23) 조선위생사정요람. 15

1922년 5월 2일 조선총독부령 제76호 간호부규칙 개정²⁴⁾

제1조 간호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18세 이상의 여자로 아래의 자격이 있으며 도지사의 면허를 받을 것을 요함

1. 본령에 정한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道)자혜의원 간호부조산부양성소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
 3. 조선총독이 지정한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자
 4. 도(道)·부(府)·현(縣)의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
 5. 관립, 부현립 또는 일본적십자사의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자
- 전항 제3호의 지정은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여학교 혹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제2 학년 수업자,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 고등과의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입학케 하는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양성소에 이를 행함

제2조 아래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간호부의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음

1.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간호부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는 죄 또는 간호부의 업무에 관한 죄를 범한 자
3. 성행 불량으로 간호부 됨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간호부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적, 주소, 씨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면에 이력서 및 제1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것.

도지사가 전항의 신청자에게 면허를 줄 때는 간호부면허증을 교부함

제4조 간호부시험은 도지사가 이를 시행함. 시험기일 및 장소는 도지사가 이를 고시함.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음.

1. 인체의 구조 및 주요기관의 기능
2. 간호방법
3. 위생 및 전염병 대의
4. 소독방법
5. 봉대술 및 치료기계 취급법 대의

6. 구급처치

제5조 1년 이상 간호의 학술을 수업한 자가 아니면 간호부시험을 받을 수 없음

제6조 간호부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적, 주소, 씨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면에 이력서 및 수험자격을 증명하기 충분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함

제7조 간호부가 개업한 때는 1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제8조 간호부는 주치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 피간호자에 대하여 치료기계를 사용하거나, 약품을 수여하거나 또는 그 지시를 할 수 없음. 단 임시구급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음

제9조 간호부가 그 주소를 다른 도로 이전할 때는 10일 내에 간호부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新舊) 양쪽의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간호부가 그 도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때는 10일 내에 후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0조 간호부 면허증을 훼손·망실한 때는 그 사유를 적어 20일 내에 주소지의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출원하여야 함. 단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한 간호부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함.

씨명에 변경이 생기거나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를 적어 20일 내에 간호부면허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서환을 출원해야 함.

망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때는 즉시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제11조 간호부가 폐업 혹은 사망했을 때 또는 실종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20일 이내에 간호부면허증을 주소지의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함. 단 사망 또는 실종신고의 경우에는 호주는 가족으로부터 그 수속을 해야 함.

전항의 경우에 간호부면허증을 반납하기 불가능한 때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제12조 간호부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1원, 간호부면허증의 서환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50전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써 납부해야 함.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치 아니함

제13조 간호부 취차소(取次所)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에 관한 내규를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신청해야 함. 내규를 변경

24) 조선총독부판보. 1922.5.2.

코자 하는 때도 역시 같음.
 전항의 영업소를 폐지한 때는 10일 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4조 본령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에게 신고할 서류는 소관 경찰서를 경유해야 함
 제15조 간호부가 제2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주소지의 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전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5일 내에 간호부면허증을 소관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아 제출한 간호부면허증에는 그 이면에 정지의 요지를 기재하여 기간 만료한 후 이를 환부함
 제16조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간호부 취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에 대하여 폐지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제17조 면허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간호의 업무를 한 자 혹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제18조 인가를 받지 않고 간호부의 취차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제16조의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제19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함

부칙
 본령은 발포일부터 이를 시행함
 본령 시행 전에 교부된 간호부면허증은 본령에 의하여 교부된 간호부면허증으로 간주함.
 본령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간호부취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는 본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령에 의하는 간호부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주함.
 본령 시행 전에 지정을 받은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 양성소는 본령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1914년 제정 당시의 ‘간호부 규칙’과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간호부의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으로부터 지정 받는 간호교육기관의 기준을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여학교 또는 여

자고등보통학교의 제2학년 수업자,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 고등과의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입학케 하는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양성소”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관립 간호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으로²⁵⁾, 이로써 졸업생이 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간호교육기관은 입학자격과 수업연한에 있어서 수준의 상향통일을 보게 되었다. 간호부 시험에 있어서는 “1년 이상 간호의 학술을 수업한 자가 아니면 간호부 시험을 받을 수 없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독학으로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간호부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실무경험이 있어야 간호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신 실기시험을 없앴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이전의 3과목에서 6과목으로 강화하였다. 이로써 자격 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획득하는 간호부 역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간호부는 주치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 피간호자에 대하여 치료기계를 사용하거나, 약품을 수여하거나 또는 그 지시를 할 수 없음. 단 임시구급의 경우에는 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라는 규정을 제8조로 두었다. 이는 제정 당시의 ‘간호부규칙’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간호부 업무의 범위를 밝히면서 동시에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1915년 내무성령 제9호로 반포된 일본의 ‘간호부규칙’²⁶⁾과 같은 것이었고, 이로써 일본과 한국의 간호부 자격은 통일을 보았다. 그 밖의 변화로는 면허 발급 등의 사무를 도지사가 담당하는 등 간호제도 시행과 규제의 주체가 도지사로 이관되었음이 명시되었고, 간호부면허증에 명시되는 면허증 부여자도 도경무부장에서 도지사로 변화하였다.²⁷⁾ 그 외에도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이 문제시되었던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자기완결성을 갖춘 모습으로 다듬어졌다.

이어 7월 7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02호로 다시 한번 ‘간호부규칙’을 개정하여 일본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간호부 면허 자격에 관한 조항을 일본 ‘간호부규칙’과 같게 하였다.²⁸⁾ 이렇게 1922년 두 번에 걸쳐 일본과

25) 조선총독부령 77호 ‘조선총독부의원 및 도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조선총독부관보, 1922.5.2.)
 26) 내무성령 제9호 ‘간호부규칙’, 1915.6.30.(杉田暉道 外(1996), 看護史, 제6권, 醫學書院, 東京, 230.)
 27) 조선총독부령 211호 ‘간호부규칙취급수속’(조선총독부관보, 1922.5.2.)
 28) 조선총독부관보, 1922.7.7.

한국의 간호부 자격, 업무의 범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간호부규칙'을 개정한 후 9월 1일 내무성령 제23호로 한국에서의 간호부 면허증이 한국 뿐 아니라 대만, 관동주 등 일본의 여타 식민지와 일본 내에서 통용되게 하였다.^{29,30)}

그런데, 1922년 619명에 달하던 간호부 숫자가 1923년에 507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다.³¹⁾ 그 이유로는 한국에서 획득한 면허가 일본, 대만, 관동주 등에서도 인정되면서 한국에서 면허를 획득한 간호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호부의 자격을 향상시키고 일본 본토와 통일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정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간호부의 숫자 증가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역효과를 불러왔다.

1923년 간호부 면허 자격에 관동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호부규칙'은 다시 개정되었다.³²⁾ 이후로는 주로 관공립 교육기관의 변화나 확충에 발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져서^{33~36)} 1920년대 말이 되자 '간호부규칙' 1조 1항 2호는 '원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또는 원 도자혜의원 또는 도립의원 또는 철도위원의 간호부조산부양성소의 간호부과 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자'로 정리되었다. 이외에도 일찍이 1915년 지정 받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원 간호부양성소를 비롯하여 여러 사립 간호교육기관이 1920년대에 조선총독으로부터 지정 받음으로써 이곳의 졸업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간호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립간호교육기관의 확충과 사립간호교육기관의 지정에 힘입어 간호부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 1924년에서 1930년까지 6년 동안 646명에서 1,119명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³⁷⁾

3. 1930, 40년대 : '조선간호부규칙'으로의 변화와 간호부 자격의 저하

1931년 '간호부규칙'은 '조선간호부규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³⁸⁾ '간호부규칙'이든 '조선간호부규칙'이든 모두 조선총독부령으로 반포된 법률이었으므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법률이었다. 그런데 왜 굳이 명칭을 '조선간호부규칙'으로 변경했을까? 일제강점기 '조선'이라는 명칭은 일본제국의 일부로써 한반도 지역을 이르는 명칭이었다.³⁹⁾ '간호부규칙'을 '조선간호부규칙'으로 변경한 것은 일본제국의 한 지역인 '조선'에 통용되는 법률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1930년대 들어서서 전쟁 수행을 위하여 강화된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에 좀더 걸맞는 명칭이었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에서 뿐 아니라 관동, 만주, 대만 등 여타 일본 식민지에서 획득한 간호부 자격이 한국에서의 면허 자격에 포괄되도록 함으로써 일본제국과 그 식민지의 간호부 면허는 호환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1931년 1,261명에 달하였던 간호부의 숫자는 1932년 1,171명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1922년 '간호부규칙'이 개정되었을 때처럼 한국에서 면허를 획득한 간호부가 일본의 여타 식민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후 '조선간호부규칙' 개정은 관공립 간호교육기관의 설립과⁴⁰⁾ 변경⁴¹⁾, 그리고 일본제국 식민지의 간호부 면허 자격을 포괄하며 통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즉, 1940년에는 대만의 간호부 자격이 변화하면서 이에 맞추어 관계조항을 개정하였으며,⁴²⁾ 동남아를 식민지화했던 1942년에는 남양군도에서의 자격 획득을 포괄하였다.⁴³⁾

대동아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 일로에 있던 전

29) 조선총독부의원(1928). 조선총독부의원 20년사. 66

30) 조선총독부. 제51회 제국의회설명자료(1925), 조선위생사경요람. 40, 조선총독부(1935). 시정25년사. 502

3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28). 375

32) 조선총독부령 제711호 '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23.5.7.)

33) 조선총독부관보 호외. 1925.4.1.

34) 조선총독부령 제69호 '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26.8.21)

35) 조선총독부령 제33호 '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28.6.1)

36) 조선총독부령 제74호 '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29.9.9)

37)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 409

38) 1931년 7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99호 '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31.7.31.)

39) 같은 맥락으로 일본어로는 '내지(内地)'라는 명칭으로 호칭되었다.

40) 1937년 조선총독부령 제143호 '조선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37.9.16.)에 의하여 소록도갱생원 간호부양성소가 관공립 간호교육기관에 추가되었다.

41) 1944년 조선총독부령 15호 '조선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44.1.17)은 철도병원이 교통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반영하였고, 13세에 간호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조선총독부령 제94호 '조선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40.4.9.)

43) 조선총독부령 제209호 '조선간호부규칙 개정'(조선총독부관보. 1942.8.19.)

쟁이 점점 일제에게 힘겨워지면서 유사시에 전선에 동원할 수 있는 간호부의 확충이 점차 현안으로 떠올랐고,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에서는 한국인 간호부도 전선에 동원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간호부의 확충을 위하여 '조선간호부규칙'을 개정하여 간호부의 연령 제한을 낮추고, 간호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먼저 1942년에는 18세 이상이어야 간호부가 될 수 있던 것을 17세로 낮추고 학제의 개편에 따라 간호교육기관 입학 연령을 조정하였다.⁴⁴⁾ 1944년 12월 1일에는 연령 제한을 다시 한번 낮추고 간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을 확 풀어놓는 방향으로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동안의 마지막 '조선간호부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44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403호 조선간호부규칙 개정⁴⁵⁾

제1조 제1항중 '17세'를 '16세'로,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양성소'를 '학교 또는 양성소'로, 같은조 제2항중 '또는 간호부양성소'를 '혹은 간호부양성소 또는 그에 준하는것'으로 고침

이로써 간호부가 될 수 있는 연령은 16세로 낮아졌고, 조선총독은 수업연한 2년 이상이면 어디나 간호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44년 12월 13일부터 1945년 6월 19일 사이에 전국의 68개 학교를 지정하였다. 이로써 간호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기존의 간호교육기관, 그리고 간호과정이 설립된 학교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간호교육 수준의 이원화는 그간 관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간호부의 수준을 통일하고 향상시키던 모습에서 후퇴한 '개악'이었다.⁴⁶⁾

'조선간호부규칙' 이외에도 간호부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법률들이 일제의 전쟁 확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38년의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 1941년의 '의료관계자 징용령', 1944년의 '조선의료령'이었다. 일제는 중국침략전쟁과 태평양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전쟁 수행을 위하여 국민총동원체계를 편성해갔고, '군수공업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1938년에는 전시태세에 대비하여 '국가총동원법'에 근거를 두고 의사, 약제사, 간호부 등 의료인력의 개인별 기능등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의료인력의 수요를 조절하고⁴⁷⁾, "초비상시에는 각 개인별로 그 기술을 발휘하도록"⁴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⁴⁹⁾에 의하면 직업능력을 신고해야 하는 의료관계자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그리고 간호부였다. 간호부는 그해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주소, 학력과 경력, 취업 장소, 취업 상태, 봉급 등의 액수, 건강상황,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자의 수 등을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했다. 신고사항에 변화가 있을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후로 4년마다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1941년 12월 15에는 칙령 1131호로 '의료관계자 징용령'을 공포하고, 이듬해 10월 15일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의료관계자 징용령 시행규칙'과 관계규칙을 실시하였다.⁵⁰⁾ 이에 따라 조선총독이 발행하는 '징용령장'을 받는 간호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사상 또는 군인원호상 필요한 위생에 관계된 총동원업무를 비롯하여 방공관계 지방공공단체,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 사업장과 그 이외 시설에서 위생에 관계되는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었다.⁵¹⁾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과 '의료관계자 징용령'에 의하여 국가는 의료인력으로써 간호부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1944년에는 '조선의료령'과 '조선의료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⁵²⁾ 이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의생(醫生), 보건부(保健婦), 조산부와 함께 간호부는 '의료관계자'를 구성하였다. '조선의료령'이 만들어진 명목상의 이유는 의사 등의 개업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을

44) 조선총독부령 제290호 조선간호부규칙 개정 (조선총독부관보 1942.11.16)

제1조 제1항중 '18세'를 '17세'로, 같은조 제2항중 '16세'를 '15세'로, '고등학교 혹은 보통학교의 졸업자'를 '국민학교 고등과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고치며 '혹은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삭제

45) 조선총독부관보, 1944.12.1.

46) 김문실 외.(1998)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6

47) 동아일보. 1938.7.1

48) 매일신보. 1938.7.3.

49) 滿鮮之醫界 210호. 1938.9.15. 61-62.

50) 조선총독부관보. 1942.10.15.

51) 매일신보. 1942.10.18.

52) 1944년 8월 21일 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조선총독부관보 194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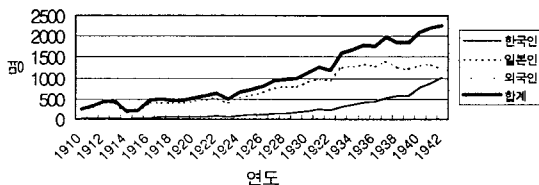
IV. 결 론

적절히 배치하여 무의촌을 가능한 한 없애어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게 하는 등, “국민의 체력 향상과 보건확보라는 숭고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봉공하게 하여 인술(仁術)로서의 의료시설을 재편성하려는 것”⁵³⁾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일제의 전쟁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어 악화된 식민지 한국의 민심을 회유하면서, 조선총독이 의료관계자를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조선의료령’에는 간호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고, “본장에 규정하는 것 이외 보건부, 조산부 및 간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전쟁 수행 이외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었고 1년 후에 패전함으로써 ‘조선의료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간호부에 대하여 여타 법률이 만들어지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간호부규칙’이 계속하여 간호법으로 작용하였다.

1931년에서 1943년 사이에 간호부의 숫자는 1,261명에서 2,462명으로 약 2배가 되었다.⁵⁴⁾ 그중에도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전체 간호부의 거의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간호부의 숫자는 점차 줄어 1942년에는 외국인 간호부가 한명도 남아있지 못한 것이 보인다. 1943년 이후로는 전시체제에 돌입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통제를 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에 간호부 숫자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상 일제강점기 민족별 간호부 숫자의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일제강점기 간호부 숫자 추이



서양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수가 늘어나자 1914년 간호부의 자격과 면허를 규정한 간호단독법인 ‘간호부규칙’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이른 시기에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간호인력을 생산하고 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되어 특정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한 여성만이 간호부의 면허를 받고 배타적으로 간호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격에 미달한 경우는 면허에서 제외되어 간호부의 숫자는 1년 사이에 60%나 감소하였다. 한편, ‘간호부규칙’을 통하여 간호부의 자격은 표준화되었지만, 여성만이 간호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의 성에 관한 고정관념이 제도화되었으며, 권한 부여보다는 규제와 단속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22년의 ‘간호부규칙’ 개정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 발맞추어 간호부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개정은 일본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간호부 수준을 맞추어서 간호부 면허를 통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간호부가 무척 부족한 상태였지만, 이 ‘간호부규칙’ 개정은 일시적으로나마 간호부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대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확대에 따라 ‘간호부규칙’은 ‘조선간호부규칙’이 되었고, 일본제국 전체의 간호부 면허가 호환성을 가지면서 한국의 간호부의 숫자는 다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하여 ‘조선간호부규칙’을 개정하였다. 즉, 간호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연령 제한을 점차 낮추었고, 막바지에는 간호과정도 설치된 여학교만 졸업해도 간호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간호부는 일제가 의료인력을 관리하고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관계자 직업능력신고령’, ‘의료관계자 징용령’, ‘조선의료령’의 대상의 하나로 관리되었다.

이렇게 우리 나라 간호 면허 제도의 출발점인 ‘간호부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정책에 따라 법령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간호직과 국가간의 갈등과 협상을 통하여 간호의 면허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선진국과 우리 나라 간호와의 차이점이었다.

53) 매일신보, 1944.8.13

54) 경성일보사, 소화 20년도 조선연감, 1944

참 고 문 헌

1. 일차사료

구한국 관보, 1907.3.13
 조선총독부 (1910-1942).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1910-1943). 통계연보.
 경무총감부 위생과 (1917). 조선위생법규류집.
 白石保成 (1918). 朝鮮衛生要義.
 조선총독부 (1922). 朝鮮衛生事情要覽.
 조선총독부 (1925). 제51회 제국의회설명자료.
 조선총독부의원 (1928). 조선총독부의원 20년사.
 조선총독부 (1935). 施政25年史.
 조선총독부 (1942). 현대조선법령집람.
 동아일보 (1920-1940).
 매일신보 (1910-1945).
 滿鮮之醫界 (1921-1942).
 경성일보사, 매일신문사 (1934-1945). 조선연감.

2. 이차사료

강만길 외 (1994). 한국사. 한길사
 김문실 외 (1998). 간호의 역사.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997).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
 신동원 (1986). 일제의 보건의료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병직 (1993).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자료의 분석.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이영복 (1991). 개정증보 간호사. 수문사.
 홍순원 (1981). 조선보건사. 함북일보사
 홍신영 (1972).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杉田暉道 外 (1996). 看護史 제6판. 醫學書院. 東京.

– Abstract –

Key concept : Nurses Ordinance, Japanese rul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Colony, Nursing

The ‘Nurses Ordinance’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Yi, Kodme · Kim, Hwajoong***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promulgated the ‘Nurses Ordinance(Kanhoboo Kyuchick)’ in 1914. It was the first act that regulated nurses’ licensure in Korea. The gendarme did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ordinance. After the Nurses Ordinance of 1914, nurses without licenses could no longer work with the name of nurse, and Korean nursing gained a more professional status.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Japan realized that its iron rule had to be more sophisti-

cated. The gendarme gave way to an ordinary constabulary force. The Nurses Ordinance was amended to set the nurses quality as good as that of Japanese nurses, and the nurses licensure of Korea could also be used in Japan.

In 1931 the Japanese war against China began, and the Japanese imposed military rule once again. The Nurses Ordinance was amended to ‘The Korea Nurses Ordinance’.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1937) and of World War II in the Pacific(1941), the Japanese desperately needed additional manpower to replenish the dwindling ranks of their military and labour forces. To produce more nurses, the colonial authorities amended the ‘Korea Nurses Ordinance’ and lowered the age and educational status of nurses to produce more numbers.

Until the Japanese surrender in August 1945,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Koreans had no say in the passing of these acts, and the colonial authority could make and pass any act at will.

*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